

2025/26

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2시간 완성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
도서명 : 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

ISBN : 979-11-7393-073-7

발간일 : 2025-09-01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1,000원



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

[목차]

제1권 해사안전기본법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등(p12)

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(p17)

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 진흥(p25)

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(p28)

제6장 보칙(p31)

제7장 벌칙(p33)

제2권 해상교통안전법

제1장 총칙(p36)

제2장 수역 안전관리(p51)

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(p61)

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(p99)

제5장 선박의 항법 등(p140)

제6장 보칙(p205)

제7장 벌칙(p208~219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권 해사안전기본법

(이하 법)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
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군의 구청장

중앙기관장은 (관계) 중앙행정기관의 장

제1장 총칙

1~6조

1. 목적

- 해사안전 정책/제도 기본 사항 규정
- 해양사고 방지, 원활한 교통 확보
-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에 이바지

2. 기본이념

- 해양에서 선박 항행/운항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 생명/신체,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, 자자체의 책무임 확인
- 해양 이용, 보존 시책 수립시 해사안전 우선 고려
-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도모

3. 정의

가. 해사안전관리

- 선원/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, 선박/화물 등 물적 요인, 해상교통체계/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, 국제협약/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/체계적으로 관리해,
- 선박 운용 관련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생명/신체, 재산 안전 확보 위한 모든 활동

나. 선박

-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

있는 모든 종류의 배

- 수상항공기(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)와 수면비행선박(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) 포함

다. 해양시설

- 자원 탐사/개발, 해양과학조사, 선박 계류/수리/하역, 해상주거/관광/레저 등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, 터널, 케이블, 인공섬, 시설물, 해상부유 구조물
- 단, 선박 제외

라. 해사안전산업

- 해양사고로부터 생명, 신체, 재산을 보호하기

위한 기술, 장비, 시설, 제품 등 개발, 생산,
유통, 관련 서비스 제공

마. 해상교통망

- 선박 운항상 안전 확보와 원활한
운항흐름을 위해 장관이 영해와 내수에
설정하는 각종 항로, 각종 수역 등 해양공간과
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

바. 해사 사이버안전

- 사이버공격에서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해
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, 무결성,
가용성 등 안전성 유지

4. 국가 등의 책무

가. 국가, 지자체는

1) 다음 시책 수립/시행

- 해사안전 확보, 해양에서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-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해양시설 관리, 해상교통망 구축/관리, 해상교통 신기술 개발/기반조성 지원,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
- 해사안전 종사자 안전 확보, 복지 향상

2)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촉진을 위해

해사안전 지식/정보 제공, 교육, 해사안전 문화 홍보 노력

나. 국가는

- 외국,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 기술협력, 정보교환, 공동 조사/연구 기구설치 등 효율적 국제협력 추진 노력
- 해사안전 산업 진흥, 국제화 지원

5. 국민 등의 책무

가) 모든 국민은 국가/지자체 수립/시행

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력

나) 선박/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시책에

협력해 자기가 소유/관리, 운영하는

선박/해양시설에서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

않게 종사자 교육/훈련, 안전규정 준수

6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국가는 법의 목적/기본이념에 맞게
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 제정, 개정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

등

7~10조

1. 장관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(이하
기본계획) 수립

- 가.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 요
-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가능

나. 내용

1) 중요한 사항

- 정책 중장기 추진 **목표**, 기본방향
- **제도**/여건 개선
- **투자**/자원 조달

2) 기타 사항

- 정책 환경 변화/전망
- 선박/해양시설, 여객/승무원 안전 증진
- 수역 설정, 해상교통환경 조사, 사고
위해요소 개선

- 선박 항행보조시설, 장비, 정보통신체제
설치/운영
- 인력 양성/수급
- 지식 보급, 문화 증진
- 기술 연구/개발
- 산업 육성
- 국제협력
- 부문별/기관별/연차별 사업계획 추진/시행
- 장관 인정 사항

다. 기본계획 수립, 중요한 사항 변경시 관계
행정기관 장과 협의 요

라. 기본계획 수립/변경을 위해 중앙기관장,

시도지사, 시군구, 공공기관의 장, 해사안전
관련 기관/단체 장, 개인에 자료 제출, 의견
진술 등 협력 요청

-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따라야 함

2. 해사안전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

가) 장관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
수립/시행 요

나) 장관은 수립지침을 작성해 중앙기관장,
시도지사, 시군구, 공공기관 장에 통보

- 통보 받은 자는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해
장관에 제출